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07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607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9.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 동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6. 12. 31.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7개 항목에사업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 및 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동의)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07

제출년월일 : 2026. 8. 27.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 동의)

2) 추진 필요성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및 교육을 지원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 및 식생활 향상에 기여

○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

○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 순회방문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 급식소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지원실적 보고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 맞춤형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위탁)

마. 위탁시설의 개요

1) **위탁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 **주요사업**: 급식소 등록·관리, 순회방문지도, 급식관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 식단·레시피 개발 및 교육정보 제공, 특성화 사업 등

3) **소요예산**: 1,227,500천원(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 26년 본예산 기준

4) 인력 및 시설 * 「2026년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약처)」에 따른 운영기준

○ 구간별 관리 급식소 수 및 직원 기준

구간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급식소 수(개소)		300개 이상	340개 이상	380개 이상	420개 이상
직원 총 상한(명)		19	21	23	25
	센터장	1	1	1	1
	팀 장	3~4	3~4	3~4	3~4
	팀 원	14~15	16~17	18~19	20~21

○ 시설기준(권장사항)

구분	기준
사무실	사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소회의실 겸 상담실	1) 1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회의 테이블 및 의자
교육실	1)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책상, 의자, 교육용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화이트보드 등 3) 간단한 조리시연을 위한 싱크대, 오븐 및 냉장고

바.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1) 수탁기관의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별첨)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조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227,500천원(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 26년 기준

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단위: 원)	비고
총 계		**1,227,500,000**	
인건비(110)		**837,983,060**	
	보수	836,233,060	
	일용임금	1,750,000	
운영비(210)		**339,646,940**	
	일반수용비	134,042,900	
	공공요금 및 제세	220,000	
	피복비	1,540,000	
	임차료	35,129,600	
	차량비 등	5,140,000	
	재료비	14,360,000	
	복리후생비	79,999,440	
	기타운영비	69,215,000	
여 비(220)		**30,870,000**	
	국내여비	30,870,000	
직무수행경비(250)		**18,000,000**	
	특정업무경비	18,000,000	
유형자산(430)		**1,000,000**	
	자산취득비	1,000,000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2026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약처) 준용
※ 2026년 기본급: 25년 대비 3.5% 인상 / 2027년 예산은 식약처 지급기준(26. 12월 중 시달 예정)에 따라 조정

[現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수탁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 (운영기간) 2022. 1. 1. ~ 2026. 12. 31. (5년간)
○ (위　　치)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 (도마동)
○ (운영인력) 23명 / 센터장 1, 팀장 4, 팀원 18명
○ (시설현황) 사무실, 어린이 체험교육실, 회의실, 창고, 조리 실습실, 영양교육 실습실
○ (관리대상) 425개소 / 어린이집 250, 유치원 18, 지역아동센터 50, 사회복지시설 107 * 26년 6월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 1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붙임 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등록번호	위생과-19101
등록일자	2026. 8. 13.
결재일자	2026. 8. 13.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위생행정팀장	위생과장 직무대리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민아	박성자	양동호	안명옥	최동규	2026. 8. 13. 전문학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이경		
	예산팀장	강재형	조직평가팀장	성지은
	주무관	이소영	주무관	윤원식

구민 주권, 행복 도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 재 요 지

○ **(위탁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탁방법)** **제위탁**(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예산)** 1,227,500천원(국비40%, 시비30%, 구비30%) * 2026 예산기준

○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 심사 및 공고	→	위수탁 협약체결
제1차 정례회(9월)		모집공고(10월)		위원회심의(11월)		구↔수탁자(12월)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과/위생행정]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2026. 12. 31.) 도래**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2 추진방향 【재위탁】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3 現 운영현황

○ **(시 설 명)**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정현)
○ **(수탁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이경찬)
○ **(위탁기간)** 2022. 1. 1. ~ 2026. 12. 31. / 5년 * 최초위탁: 2013. 12. 26.
○ **(예 산 액)** 1,227,500천원(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 **(시설현황)**

소 재 지	시설규모	인력현황	예산현황	주요시설
배재로 155-40 (도마동,배재대학교)	365.89㎡ (110.87평)	23명 (센터장1, 부센터장1, 팀장3, 팀원18)	**총 1,227백만원** 인건비838백만원 운영비340백만원 기 타 49백만원	어린이 체험교육실, 조리·영양교육 실습실 등

4 그동안 추진상황

○ 2013. 12. 26.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초 위탁** 체결 / 공개모집

○ 2019. 04. 16.「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24. 04. 08.「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추가

○ 2024. 07. 01. 서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 **위탁 추진현황**

구 분	최초위탁	재계약(1차)	재계약(2차)	재계약(3차)
수탁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기간	2014. 1. 1. ~ 2015. 12. 31.(2년)	2016. 1. 1. ~ 2018. 12. 31.(3년)	2019. 1. 1. ~ 2021. 12. 31.(3년)	2022. 1. 1. ~ 2026. 12. 31.(5년)
사 업 비	360,000천원	600,000천원	840,000천원	1,095,000천원

[센 터 운 영 현 황]

○ (운영주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 (도마동)

○ (운영기간) 2022. 1. 1. ~ 2026. 12. 31. (5년간)

○ (운영인력) 23명 / 센터장 1, 부센터장(팀장 겸직) 1, 팀장 3, 팀원 18명

○ (시설현황) 사무실, 어린이 체험교육실, 회의실, 창고, 조리 실습실, 영양교육 실습실

○ (관리대상) 425개소 / 어린이집 250, 유치원 18, 지역아동센터 50, 사회복지시설 107

※ 세부 운영현황 [붙임 1] 첨부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적정】

○ **(위탁사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

○ **(검토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7개 항목

○ **(세부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①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 **검토의견: 민간위탁이 타당함** •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사업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업임. • 센터의 민간위탁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과 면허기준(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성을 갖춘 필수인력을 민간의 고용 구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구청은 직접 운영보다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및 안정적인 위생· 영양관리지원 서비스 지원 측면에서 유리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전성	□ **검토의견: 적정** •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해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적 역할을 수행 • 관련 법에 사업내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을 민간이 임의로 축소하거나 서비스 대상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공공성이 담보됨.
③ 경제적 효율성	□ **검토의견: 적정** • 직영 운영 시 상근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확보와 조직확대 등 재정 및 운영상 부담 증가 • 위탁 운영 시 전문인력의 채용 및 관리가 용이하며, 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④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검토의견: 적정** • 급식관리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검토의견: 적정**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급식소 현황과 사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함으로써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검토의견: 적정** • 사업실적(교육, 순회방문지도, 홍보), 만족도 조사, 업무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매년 보고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정량적, 정성적 지표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등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함.
⑦ 민간서비스 공급 현황	□ **검토의견: 적정**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 등 역량 있는 기관들을 통해 안정적 운영 주체를 확보할 수 있음. • 공개모집 방식은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 위탁 수행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며, 전문기관 등을 통해 위탁 운영이 가능함.

-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인프라(전문인력, 시설)를 활용함으로써, 직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및 시설 구축의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함.

- 특히, 대전시·구 합동 현장평가 결과, 급식소 등록관리, 특화사업 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대전시·구 합동 현장평가: 199.8점/200점(운영관리, 방문지도 등 주요 지표 우수)
  - 2025년 만족도 조사: 급식소 189개소 참여, 주요 항목 100점(위생·영양관리, 교육, 식단 등)

- 또한, 전문기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 및 주민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함.

- 아울러, 민간 위탁 운영 시 식약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향후 운영 방식에 관하여 사업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일정

구의회 동의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 심사 및 공고	→	위·수탁 협약체결
제1차 정례회('26. 9월)		모집공고('26. 10월)		위원회심의('26. 11월)		구⇔수탁자('26. 12월)

***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계획 별도 수립하여 추진**

☐ 위탁개요

○ **(위탁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탁사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 순회방문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 급식소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지원실적 보고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 맞춤형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방법)** 재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소요예산)** 1,227,500천원(민간위탁금)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1,227,500 (천원)	• 인건비(급여 및 제수당 등) 837,983천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339,646천원 • 기타경비(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9,870천원	2026년 본예산 기준이며, 사업예산 조정될 수 있음.

※ 26년 기본급: 25년 대비 3.5% 인상 / 27년 예산은 식약처 지급기준(26. 12월 중 시달 예정)에 따라 조정

○ **(위탁조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 원칙

○ **(선정심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심사계획 별도수립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심의일자: 2026. 11월 예정(10인 이내 구성)
- 구 성: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구 소속 공무원, 의회 추천 구의원(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제외), 위탁 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에 위탁 사무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26. 8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제1차 정례회): '26. 8월

○ 수기관 공개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 '26. 9월 ~ 10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 공고: '26. 11월

○ 위·수탁기관 운영협약 체결 및 인계인수: '26. 12월